수협은행

Sh첫만남우대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◈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1515/1644-1515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uhyup-bank.com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: Sh첫만남우대예금

■ 상품특징: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또는 증서), 예금상품계약서,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	300—2 3 1// 1100 11 1 // 1112 1124 1140 11 —42 42 11 11 11 11 11				
	구	분		내 용	
가	입	대	상	실명의 개인 (1인 1계좌)	
가	입	금	액	1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	
상	품	유	형	거치식예금	
계	약	기	간	1년	
거	래	방	법	• 신규 :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 • 해지 : 영업점, 비대면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	
계 [']	약 해	지 방	법	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단,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, 본인 명의 수협은행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.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, 서비스 신청시 만기일(만기일이 휴일 등 비 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자동해지하여 세후원리금을 고객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함 계좌의 만기가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 만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 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	
7	본 2025.04	금 .18 기준	리)	연 2.05% (세금공제 전 기준)	

•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05%p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. 구 분 우대금리 확정시기 적용기준 수협은행 예적금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) 첫 거래 첫거래 고객 금 연1.0%p 대 리 신규시 우대 -최근 1년간 수협은행 예·적금 활동계좌 미보유 고객 (최대 연 1.05%) 포함^{주1)} (세금공제전) 마케팅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상품서비스 안내 (2025.04.18 기준) 연0.05%p 신규시 동의 등) 내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 이 예금 신규일부터 만기 전일까지 당행 '스마트폰 상품 만기 연0.8%p 해지시 뱅킹의 상품 알리기'를 통해 이 상품 추천 시 알리기 주1) 이 예금 가입 기준 1년전부터 가입 전일까지 수협은행 예·적금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)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제 휴 금 리 없음 • 만기이자 :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(약정)금리*로 계산한 금액 * 만기(약정)금리 = 기본금리 + 우대금리 • 이자계산 산식 : 원금(신규금액) × 만기(약정)금리 × 계약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 • 만기일에 해지하는 경우 <u></u>마기이자 산출근거 신규일 만기일 전일 • 이자계산기간(계약일수): 신규일(포함) ~ 만기일전일(포함) (단위: 세금공제 전 기준, 연%) 기 간 이율 비고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후 1개월 이내 (월이자지급식 기준) 기본금리의 1/2 만 기 후 금 리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후 1개월 초과 ~ (2025.04.18 기준) 3개월 이내 (월이자지급식 기준) 기본금리의 1/4 만기후 3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*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반정기예금(월이자지급식) 또는 보통예금의 기본금리임 중 도 해 지 금 리 • 가입일 당시 은행이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(2025.04.18 기준)

			(단위 : 세금 ,	 공제 전 기준, 연%)		
	기 간	금리	최저금리	비고		
	3개월미만	0.1				
	3개월이상 6개월미만	기본금리*×3÷약정기간***×55%	0.10	금리가		
	6개월이상 10개월미만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÷약정기간***×55%	0.10	금니기 최저금리		
	10개월이상11개월미만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÷약정기간***×80%	0.10	미만인 경우에		
	11개월이상	기본금리*×경과월수**÷약정기간***×90%	0.10	최저금리 적용		
	* 기본금리: 신규가입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 기준) 기본금리(우대금리 제외) ** 경과월수: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 ***약정기간: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사					
	•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					
	회전식 정기예금(• 계산방법(예시)	이 유리할 수 있음				
중 도 해 지 이 자 산 출 근 거	기본금	기본금리 X 경과월수 / 약정기 기본금리 X 경과월수 / 약정기간 X 80% 리 X 3 / 약정기간 X 55% 기본금리 X 경과월수 / 약정기간 X	간 X 90%	약정금리		
		3개월 6개월 10개월11개월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선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가		_{만기일} 자를 보기쉽게		
이 자 지 급 방 식		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우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	적용됩니다	나 .		
연계·제휴서비스	• 해당사항 없음					
예금자보호여부	무이근육성분	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성	_			
세 제 혜 택	가능 * 관	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 면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/ 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
양도 및 담보제공	• 양도 : 불가 단,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• 담보제공 :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가능					
일 부 해 지	• 만기해지 포함 3호 (단, 만기 전 일부해지;	가능 [가능 [가능	<u> </u>	상 유지 필수)		

계 약 기 간 연 장	불가
자 동 재 예 치	불가
무 통 장 거 래	가능
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	• 계좌에 <u>압류^{주1}</u> , <u>가압류^{주2}</u> , <u>질권설정^{주3}</u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• 예금간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휴면예금 및 출연	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^{주4)}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위 법 계 약 해 지 권	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 료 열 람 요 구 권	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원리금 이체신청 서비스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의 경우 해지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, 본인명의 수협은행의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.

-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(1588-1515)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-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〈부록〉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주1) 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주2) 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 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주3) 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주4) 출연	 ●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 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●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 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